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양성평등

부록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떤 양성평등교육 정책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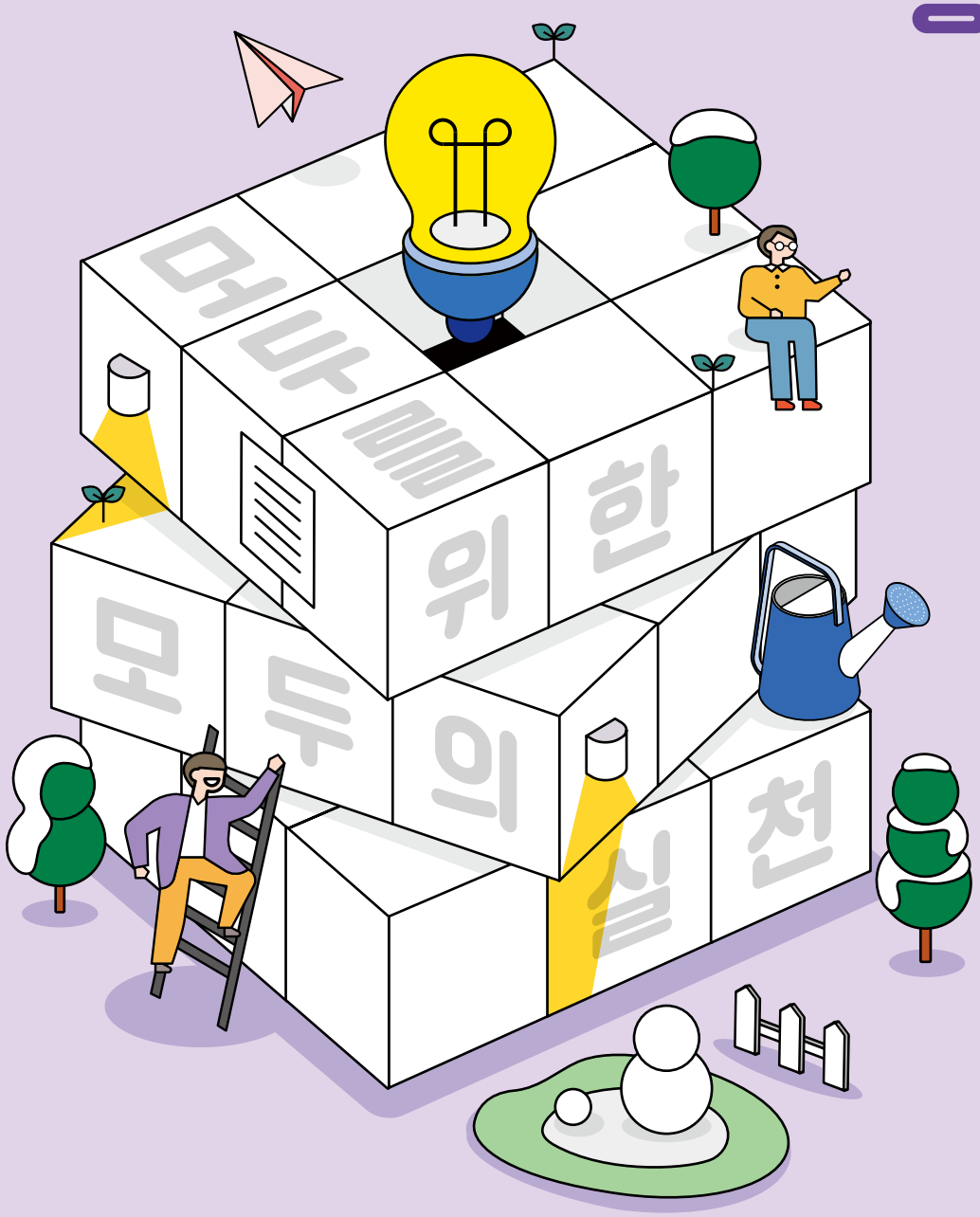

부록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떤 양성평등교육 정책들이 있나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안내

부록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떤 양성평등교육 정책들이 있나요?

CONTENTS



1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과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03

2
해외 여러 나라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12

3
성차별적인 학교 운영 방식과 관련 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0

적용해 봅시다!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실천하기 위한 '양성평등 진단기준' 측정과 활용
28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과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과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은 크게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 영역의 성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으로는 UNESCO의 '교육에서의 차별 방지에 관한 협약',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UN의 '아동권리협약'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법 중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양성평등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은 '교육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스포츠 활동이나 진로교육 등 여성이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범교과 학습 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과서 내 성차별 내용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교양과목에서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 관련 수업을 확대·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 양성평등교육 관련 국제법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은 크게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육 영역의 성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으로는 1960년에 채택된 UNESCO의 **'교육에서의 차별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01], 1966년에 채택된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02], 1979년에 채택된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03], 1989년에 채택된 UN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04]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협약들은 학생들의 성평등 관련 의식 고취보다는 초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과 중·고등교육에 제한 없는 참여 보장을 강조하는 등 교육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는 이들 국제협약 중 '교육에서의 차별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05]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06] 정도에 한정된다[표 1]. 그러나

성평등한 교육기회라는 것은 사실상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평등, 다시 말해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포함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1970년대, 중학교는 1980년대, 고등학교는 1990년대에 성별 취학률이 동등한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약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4:37-38). 다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07]에서 남녀학생의 동일한 교육과정 공유,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해소, 여성 진출 취약분야 지원 같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등,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이루어야 할 평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다)항에서 모든 수준과 모든 형태의 교육이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관련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교육방법 개선을 권하는 조항은 학교교육의 내용에서 질적인 성평등을 추구할 것을 규정하는 유일한 조항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법 조항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통틀어 본 조항이 유일하다. 또한 (사)항의 경우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여학생들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교육에도 유용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나)항의 남녀학생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년 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를 남녀 공통과목으로 통합했기 때문에(변화순 외, 2011:177),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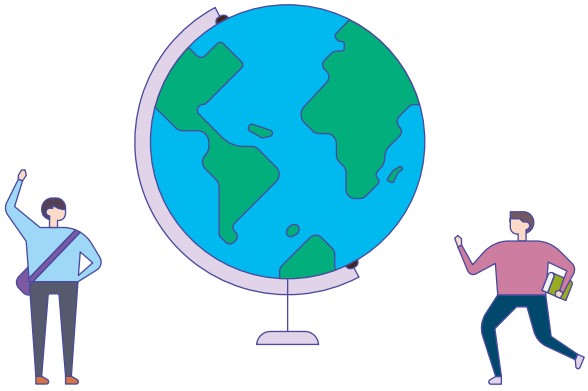

01) UNESCO,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294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2020.9.18.)

02) UN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2020.9.18.)

03) UN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2020.9.18.)

04) UN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2020.9.18.)

05) UNESCO,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294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2020.9.18.)

06) UN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2020.9.18.)

07) Ibid.

[표-1]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법적 근거 : 국제법

협약	조문
교육에서의 차별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차별'이라는 말은 구별, 배타, 제한이나 또는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교육상 동등한 대우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갖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가) 어떠한 형태 혹은 수준의 교육을 어느 개인이나 또는 집단 인으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나) 열등한 수준의 교육으로 어느 개인이나 집단 인을 제한하는 것; (다) 본 협약 제2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사람들 혹은 집단 인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또는 (라) 어느 개인 혹은 집단 인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모순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이라는 말은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수준과 질 그리고 주어진 교육의 조건을 포함한다. **제2조** **한 국가 내에서 허용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본 협약 제1조의 취지 내에서 차별을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남녀 학생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제도나 학교가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직원과 동시에 동질의 학교시설이나 교구를 마련하며 또 동등한 교과과정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나) 종교적 혹은 언어상의 이유로 해서 학생들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분리된 교육제도 혹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기관에 통학하는 것이 자유 선택이며 여기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 당국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또는 인정되는 수준과 특히 이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수준과 일치될 때; (다) 사립교육기관을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그 기관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상의 교육적인 시설을 마련할 때, 그 기관이 그 목적에 따라 운영될 때, 그리고 또 제공되는 교육이 해당당국에 의해 규정되거나 또는 인정되는 수준과 특히 이와 동등한 단계교육의 그 수준과 일치될 때.
여성차별 철폐협약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출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unescokor.cafe24.com/assets/data/standard/Wi8plioPm6j0IbwR1bHxj2Zj8qGqRD_1216825200_1.pdf(202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trtyMInfoR.do?trtySeq=295&chrClsCd=010202&print=print(2020.9.18.)

알아봅시다 : 양성평등교육 관련 국내법

국내법 중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양성평등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은 '교육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들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 있는 관련 조항은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이다. '교육기본법' 자체는 1997년에 제정되었으나, 관련 조항은 2000년에 개정하면서 추가되었다. 현재 규정된 제17조2의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고(제1항),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제2항), 여성의 진출이 취약한 분야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제3항), 관련 내용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남녀평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 외 성(性)에 대한 조항으로는 2007년에 추가된 동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가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고(제1항),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을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제2항). 제17조의2가 평등의 관점에서 젠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면, 제17조의4에서는 성(sexuality)의 특성이나 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학교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교육을 강조한 법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가 있다. 이 조항은 199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전신인 '여성발전기본법'에서부터 있던 조항으로,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책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무적인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언적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성평등 관련 교육의 의무 시행에 관련한 법적 조항은 폭력예방교육에 있다. 폭력예방교육은 교육정책이 아닌 여성정책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각각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부터는 이들 교육을 성평등관점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현재 폭력예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교육은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인권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인지, 피해자 보호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젠더 관점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표-2]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법적 근거: 국내법

법	조문
교육 기본법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 · 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202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2020.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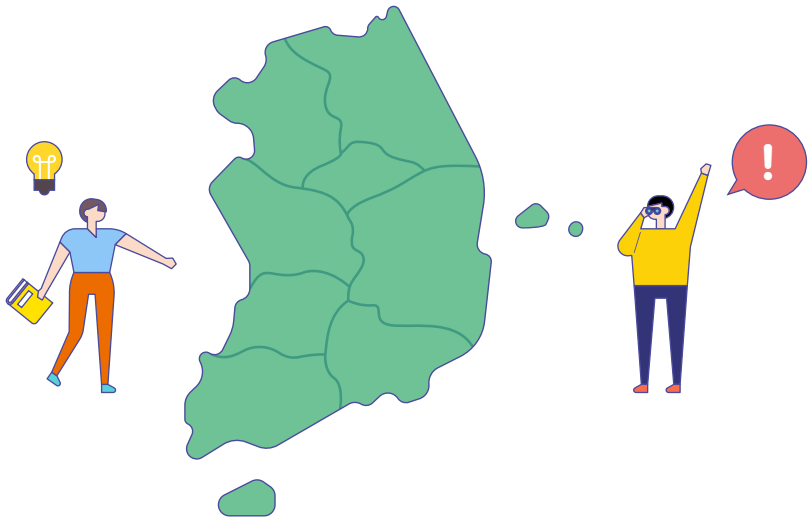

알아봅시다 : 양성평등교육 관련 정책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현황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 시행계획'(관계부처합동, 2020)**08)**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3] 참조).

먼저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스포츠 활동이나 진로교육 등 여성이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다. 초·중등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교육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범교과 학습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과서 내 성차별 내용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교양과목에서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 관련 수업을 확대·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가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진로 선택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최윤정 외, 2018a). 진로교육 현장에 성평등관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로교사들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 대상 정책으로는 현재 교장·교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표준 교육과정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도 양성평등 관련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직무연수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교육부 원격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유·초·중·고·특수교육과 교육전문직 교원 대상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해 연간 6,000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향후에는 모든 교원양성기관이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국가 수준 교원양성과정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2021년).

직원 대상 교육은 현재로서는 앞서 소개한 폭력예방교육 연간 네 시간이 전부다. 다만 성인지감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별 역량강화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초기 신규 상담교사 직무연수에도 개설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사실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학부모다. 아직까지 전문프로그램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한 '학부모On누리'**09)**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

08) 이하의 내용은 대부분 관계부처 합동(2020)에 나타난 교육 관련 양성평등정책의 내용을 발췌했다(문장의 가독성을 위해 문장별 인용은 생략한다).

09)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2020.11.26.)

교육의 내용과 교수자의 의식에 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운영시스템 자체에 이를 녹여 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 운영 체계 관련 정책으로는 양성평등한 초·중등학교 운영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여학생 생리공결제의 활성화, 고등교육 관련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등이 있다. 초·중등학교 대상 지원 정책으로는 '학교 양성평등 진단기준'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여 개별학교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환류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청별 선도학교 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 정책으로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2004년부터 국공립대 대상 양성평등조치계획이 있다. 해당 조치는 근본적으로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확대가 목표지만, 매년 평가를 실시해 개별 학교들의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각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3] 학교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현황

중과제	소과제	세부 정책 과제 내용	소관부서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초·중등 교육과정 관련 지원	◇초·중등학생용 양성평등교육 자료 개발·보급 ◇범교과 학습 주제 지도자료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내실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친화적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과용 도서 모니터링단 운영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와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 운영	교육부
	양성평등한 고등교육 강화	◇대학 교양과목 활용 등으로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시행 확대 추진	교육부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법의 기본방향에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해 양성평등 진로교육 실시 근거 마련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진로체험 관계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실시	교육부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우수 모델 확산을 위한 초·중·고 우수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시 여학생 참여 클럽 30% 이상 선정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여학생 특화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확대 ◇탈의실 미설치 중·고교에 탈의실 설치 지원	교육부

중과제	소과제	세부 정책 과제 내용	소관부서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원·예비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국가수준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모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 필수 편성 지원(2021년 적용) ◇관련 법령 개정으로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내용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 필수기준으로 규정(2020년)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자격연수 시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 운영 ◇시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양성평등 관련 직무연수 과정 운영과 교과목 편성 권장	교육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원 대상 원격 직무연수과정 운영	여성가족부
	별도의 전담 인력 양성평등 교육 강화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예방교육 시, 전문상담사의 교육 참여로 양성평등 이해 제고	교육부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On누리 사이트 및 민간 협력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양성평등한 학교교육 체계 및 운영	양성평등 초중등학교 운영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강화	◇시·도 교육청별 관내 학교 양성평등 자체진단 실시와 환류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과 활용 ◇양성평등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부
		◇교육부 타부처 요청 양성평등 연구(시범)학교 선정과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양성평등 선도·중점학교에 대한 교육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부
	여학생의 생리공결제 지속 운영과 안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결석)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안내 실시	교육부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국립대학 여성교원 임용목표제 등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과 평가	교육부

출처 : 관계부처합동(2020),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중 2020년 시행계획 재구성

해외
여러 나라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2. 해외 여러 나라들은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11)]

많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어떻게 실현할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전문성, 특히 성평등관점을 가진 교수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각 과목별로 양성평등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교수자료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교과 접목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들 국가는 국어, 도덕, 시민교육, 체육, 예술, 역사, 지리, 종교 등 다양한 교과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다룰 때도 초등교육, 초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등 학교급별·학년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배치해 점점 깊이 있는 맥락과 논리를 배워 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식' 또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 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교과 지식 속에서 성평등 이슈와 관점을 접목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 글짓기대회나 사생대회 등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면, 특히 중등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교과를 통한 교육보다는 별도의 독립적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실상 교육현장에서 교과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최윤정 외(2019b: 204)가 교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려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본인의 성평등의식 부족을 꼽는 비율은 7.7%에 불과했고, 프로그램의 부족(60.4%)과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역량 부족(53.4%)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평등교육 전문성, 특히 성평등관점을 가진 교수자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11) 해당 부분은 김자영 외(2020), '서울시교육청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부를 발췌·인용·재구성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일부 해외국가들 중에서는 각 과목별로 성평등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교수자료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의 교과 접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는 국어, 도덕, 시민교육, 체육, 예술, 역사, 지리, 종교 등 다양한 교과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다룰 때도 초등교육, 초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 등 학교급별·학년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배치해 점점 깊이 있는 맥락과 논리를 배워 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알아봅시다 :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레조 카노페(Réseau Canopé)'에서 학교 양성평등교육 촉진을 위해 '남녀학생 간 평등을 위한 실행도구(Outils Pour L'égalitè Enter Les Filles Et Les Garçons À L'école)'[12] 를 만들어 학교 양성평등교육의 원칙과 목표, 수업 방법, 학교운영 방법, 교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녀학생 간 평등을 위한 실행도구'가 제시한 많은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 개별 교과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Les programmes et pistes pédagogiques)'을 참고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Réseau Canopé, n.d.)[13].

국어(프랑스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고전과 현대 문학을 읽고, 인물과 상황 분석을 하면서 성평등과 성별 고정관념에 관해 토론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한다. 특히 프랑스어는 거의 모든 명사가 성(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남성명사와 여성명사의 특성을 찾아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당대에 여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어땠는지 등을 고찰한다. 가령 탐험소설들의 대상이 주로 남성이라는 사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주의 탐험소설을 읽어 본다거나, 여성이 지배적인 사회의 이야기 등을 살펴보는 등 기존의 사회질서와는 다른 체계와 관습을 문학작품을 읽으며 상상해 보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도덕·시민교육·역사와 지리 등 사회과에 해당하는 교과에서는 참정권·친권·재산권 등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향상했는지 등 여성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시작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등을 공부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에서는 별학교육과 공학교육의 체계와 제도 도입에 관해, 중등교육에서는

12) https://www.reseau-canope.fr/outils-egalite-filles-garcons.html(2020.5.21.)

13) 이하의 내용은 프랑스의 Réseau Canopé(n.d.)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국어로 정리한 최윤정 외(2018b:109-112)와 김은경(2018)을 참고해 기술했다.

프랑스 정치의 특징인 남녀동수제도 등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비슷한 주제도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논의 수준과 난이도를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 역시 참고할 만하다. 가령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교 운동장 사용권 등 학생 스스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교실과 학교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주제지만 성평등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직접 해결하도록 한다.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선구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연구물을 탐색하거나, 실제 유럽연합에서 천명한 성평등강령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훨씬 고차원 수준의 학습과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 설계는 초중고에서 '맨날 하는 내용'(최윤정 외, 2019a:263)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체육교과에서는 탈의실에서 개인의 내밀한 측면과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축구나 럭비 같이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경기로 인식되어 온 종목 같은 경우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뚜렷한 성차와 다름을 인지하면서 교사의 적절한 개입 하에 신체활동과 관계된 성별 고정관념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진다. 또한 기쁨, 두려움, 창피함 같은 자신의 감정을 신체로 표현하게 해서 여학생이라도 수줍지 않게 자신을 표현하고, 남학생이라도 상냥하고 부드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배우게 한다. 예술교과에서도 광고·TV·동영상 등 매체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찰하게 해 대중문화가 주입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학생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랑스 사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성교육을 양성평등교육과 구분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년에 세 시간 이상 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성교육이 그렇듯이 프랑스 또한 생물학적인 측면의 성과 윤리적 측면의 성을 다룬다(European Parliament, 2013:18-19). 그러나 이에 더하여 성의 재생산 즉, 성평등·불평등의 재생산과 성·성역할과의 관계 등 성과 관련한 주제를 보다 깊이 있는 수준으로 다루고 있으며, 단편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 관점의 논의를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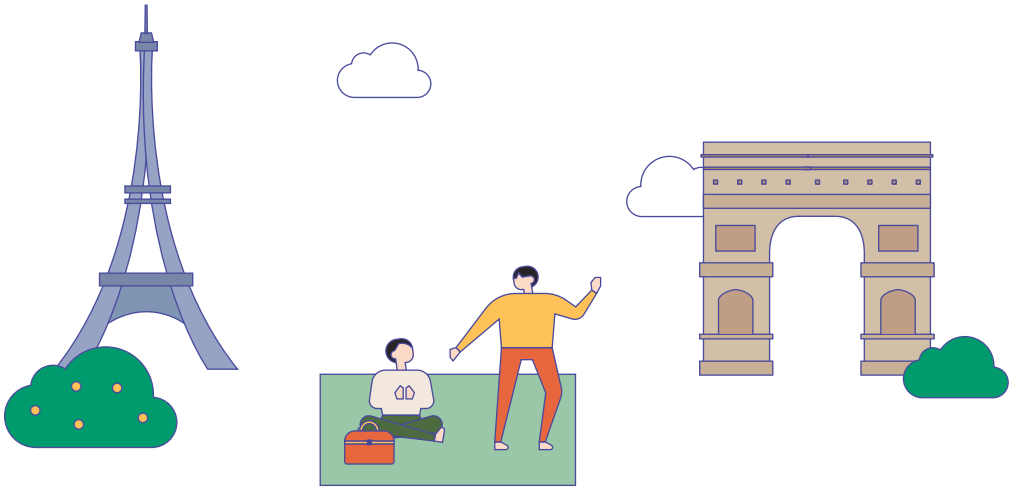

[표-4] 교과를 통한 양성평등교육 내용: 프랑스

학교급	교과	내용
초등학교	국어	- 학생들에게 널리 읽히는 고전과 현대 문학 작품을 기본 자료로 인물과 상황을 분석하고 남녀 평등·불평등, 성에 관한 정형화된 편견의 문제를 논의하고 재해석 - 독서와 글쓰기 수업에서는 문법(남성명사, 여성명사)과 직업(여성적인 직업, 남성적인 직업)을 주제로 젠더에 대한 이해 시도
	도덕과 시민성	-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교실 내 규칙 정하기 - 여성의 참정권 투쟁, 정치 영역의 남녀동수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 - 공간 내 남녀 통합과 분리에 대한 이해와 토론. 가령, 별학 VS 공학에 대한 역사적 이해, 운동장에 대한 남녀의 이미지 차이와 이를 고려한 사용 등 - 외모·옷차림의 메시지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
	체육	- 운동복 신체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논의 - 운동화 사이즈, 경기 체급, 기술적인 역량과 전략 등 신체적 특징에 관한 차이와 심판, 주장, 골키퍼 등 역할의 결정과 서로 다른 능력과 기준에 관한 논의 - 성별과 상관없이 춤이나 흉내내기 등으로 감정 표현하기
	예술	- 광고, 정보, 문서, 소설 등에 나타난 이미지의 여러 가지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학습 - 대중매체와 온라인에서 보이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과 고찰
	역사와 지리	- 역사·문화적 시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지위 변화 이해 - 여성의 인권과 지위 향상의 역사 이해(여성 참정권, 여성 재산권, 친권 행사 등)
	성교육	- 인간의 재생산 방식, 재생산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성과 성역할에 대한 이해
중학교	문학	- 고대 문학작품, 동화, 시 등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물에 대한 이미지 논의 - 20세기 이전 문학 작품들을 보며 과거 여성의 역할과 지위, 결혼·출산과 연결된 여성의 삶 등에 대한 논의와 비판 -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탐험소설에 대한 문제의식, 여성 탐험에 대한 이야기 읽기 -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문맹·차별·교육의 중요성, 여성과 남성의 관계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 분석
고등학교	문학	- 사실과 정보, 진실과 미디어,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세대별 취향과 타인의 취향, 아름다움의 기준, 성차별주의의 대한 비판과 여성의 몸, 작품 속 인물이 표방하는 가치와 저자의 의도 등을 밀도 있게 다룸 - 여성해방, 남녀의 사회적 역할 교환이나 여성의 지배적 위치를 설정한 작품 읽기, 이를 통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페미니스트 프로젝트 제안 - 타인과 나의 관계, 사회통합과 자신의 특별함 등에 대한 고찰 - 고정관념, 인종차별 등에 대한 연구
	역사와 지리	- 프랑스의 선거권, 남녀동수 등 정치·시민 분야에 나타난 성평등 이슈 논의 - 18세기 살롱문학과 페미니즘 선구자들에 대한 연구(살롱문학에서 남성 철학자들과 진행했던 토론, 프랑스혁명 당시의 여성들의 활동 등)
	시민교육	-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장애인 차별 등과 연관된 차별 논의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노동시장 여성차별, 긍정적인 차별, 동등의 개념 등을 주제로 한 시민적인 삶 고찰 - 2014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유럽행동강령 분석과 이행 현황 확인

출처: Réseau Canopé(n.d.).

참고: 최윤정 외(2018:109-112)와 김은경(2018)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알아봅시다 : 스웨덴의 사례

스웨덴은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성교육 내에서 성평등 이슈와 섹슈얼리티 이슈를 모두 다룬다. 여기서는 스웨덴 교육청 'Skolverket'이 펴낸 〈성교육 : 스웨덴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섹슈얼리티, 인간관계(Sex Education: Gender equality, sexuality and human relationships in the Swedish Curricula)〉[14] 를 중심으로 스웨덴 정부가 제시하는 교과교육을 통한 양성평등교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kolverket,2014).

스웨덴 역시 프랑스와 비슷하게 다양한 교과 내에서 성평등관점을 반영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생물과 과학이 성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부 유럽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나 재생산 관련 지식을 기본적으로 생물교과에서 다룬다. 그러나 생물학이라고 해서 2차 성징, 성병, 임신 등 육체적·신체적 특징에 관한 지식만 다루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관계, 사랑에 대한 책임, 인간의 성욕 문제 등 성과 관련한 일련의 윤리적 이슈들도 함께 포함한다.

시민교육, 종교, 역사, 지리 같은 사회과 또한 사회의 성평등 이슈를 주로 다루는 주요 교과다. 역사교과에서는 시간에 따라 젠더·섹슈얼리티·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인간성·인권·윤리와 도덕 문제를 다루는 종교교과에서는 특히 젠더·성평등·섹슈얼리티 등의 이슈가 서로 다른 종교체계 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한다. 시민교육에서는 인권·차별·인구문제·정치적 이데올로기·최근의 사회적 이슈 등을 성(性)이나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고찰하며, 비슷하게 지리교과에서는 생활조건·인구문제·자원의 제공·재생산·건강 등의 이슈를 성평등이나 섹슈얼리티와 연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다룬다.

국어(스웨덴어)나 영어 같은 언어 관련 교과에서는 다양한 작품에서 드러나거나 다루고 있는 성평등 이슈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사랑·섹슈얼리티·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을 다루기도 하고, 성별 패턴이나 관계성 관련 주제를 읽기·작문·토론의 주제로 활용한다. 영어의 경우에는 영어권 국가들의 성평등 이슈를 비교하거나 미디어에 나타난 성(性) 관련 주제들과 연결하기도 한다.

예체능 또한 성평등을 가르치는 유용한 교과로 활용된다. 미술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성(性)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관점들을 살펴본다거나 이러한 이미지들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이나 섹슈얼리티, 권력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을 자신들의 시각 작품에 반영해 보기도 한다. 공예(craft) 시간에는 색·재질·형태에 관한

14) 이하의 내용들은 해당 자료를 요약해 작성했다.

생각을 젠더와 연결해 본다거나, 패션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성(性)이 항상 학습 주제로 다루어지는 교과인 체육·보건은 건강 문제에서부터 신체적 이상(ideal) 그리고 스포츠와 다른 신체 활동의 성별 측면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음악교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령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뮤지션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사나 뮤직 비디오가 성(性)과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기술(technology)이나 가정(home and consumer studies) 교과도 성평등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교과다. 가정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비하는 행태, 가정 내 가사분담의 방식 등을 성평등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기술에서는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별 패턴, 젠더 규범이 성별에 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기술 분야의 성별 균형 이슈와 연결시킬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공계 남성 편중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다. 그래서 기술 관련 진로 영역에 존재하는 성편견을 제거하고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는 얼마나 다양한 교과에서 성평등 이슈를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개별 교육을 학교급별·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정렬해 추상적이거나 반복적인 학습을 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교과 내에서 보다 심도 깊은 학습과 성찰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깊은 통찰을 준다. **한국의 경우 예전부터 양성평등교육 관련 교수자료 개발은 종종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교과별로 접목하려는 시도는 교육부(2019)의 매핑 자료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젠더온[15] 등을 통해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어떤 교과에서 어떤 시도들이 가능한지, 다양한 교과와 접목한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접목 가능한 교과내용과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매핑(mapping)하는 시도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할 때는 학교급별·학년별 교육 내용을 심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논의와 사고에 이를 수 있도록 나선형 구조로 설계하는 것도 효과적인 작업이다.

[표-5] 교과를 통한 양성평등교육 내용 : 스웨덴

학교급	교과	내용
초등학교	생물	- 인간 사춘기, 성욕·생식·정체성, 성별에 관한 질문 - 평등, 관계, 사랑과 책임
	과학	- 사춘기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 성, 생식, 다른 유형

15) http://genderon.kigepe.or.kr/(2020.5.18.)

학교급	교과	내용
초등학교	종교	- 남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도덕적 질문 - 성평등, 성적, 배제와 권리 침해
	시민교육	- 섹슈얼리티, 성역할과 성평등
중학교	역사	- 스웨덴에서 나타났던 차별,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 남녀의 보편적 참정권 투쟁 - 젠더·섹슈얼리티의 평등과 관련한 지속성과 변화
중학교	종교	- 종교적 표현의 자유, 섹슈얼리티, 성평등관점 등 다원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기회 - 대중문화에서 삶의 목적, 관계, 사랑·성욕 등의 이슈를 얼마나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지
	시민교육	-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성적 지향 등이 청소년의 정체성과 삶에 미치는 영향
	가정·소비자 연구	- 남녀평등 관점에서 가정 내 일의 분배
	예술	- 정체성, 섹슈얼리티, 민족성에 관한 작품에서 이러한 관점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소통되는지
	체육·보건	- 개인의 스포츠 선택과 신체 활동의 성별에 따른 영향 - 스포츠와 사회에서 신체적 이상, 법과 규칙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음악	- 음악이 사람에게 미치는 신체적·개념적·감정적 영향 - 민족성과 성별의 측면에서 다른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음악의 기능
	국어	- 다양한 시대의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북유럽 소설 - 인간의 삶과 정체성과 관련된 조건에 통찰력을 제공하는 문학작품
	영어	- 관심사, 일상의 상황, 활동, 일련의 사건, 관계·윤리 등에 관한 질문 -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맥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현상, 전통, 생활 조건 등
	공예	- 패션과 트렌드의 의미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기술	- 기술에 대한 문화적 태도가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 - 직업 선택과 기술 사용
	생물	- 성적인 예방 방법과 원치 않는 임신 - 생활 조건, 건강 및 질병 사이의 관계
고등학교	역사	- 정치적 갈등, 한 문화에서 사람들의 역할을 반영하는 역사적 자료 - 남녀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변화 - 사회적 배경, 인종, 세대, 성별마다 서로 다르게 드러나는 관점
	종교	-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인종,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종교 - 종교와 관련하여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민교육	- 학생에게 유의미한 삶의 이슈, 젠더 및 섹슈얼리티 관련 정체성
	지리	- 인구 증가, 인구 분포와 공간 변화 - 도시화와 도시의 성장, 기능, 구조와 환경 영향 - 이주, 교육, 환경 변화의 중요성과 자원, 재생산 건강과 가족계획 제공 전략
	생물	- 생리, 임신 중에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
	과학	- 규범에 대한 논의, 성건강과 관계

출처 : Skoverket(2014). p.12~19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성차별적인 학교 운영 방식과 관련 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3. 성차별적인 학교 운영 방식과 관련 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16)]

많은 연구 결과들은 동일한 교육내용과 방식을 전달한다 해도, 학교의 문화적 풍토에 따라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성차별적 경험들이 양성평등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효과는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 누가 가르치는지, 누구와 함께 교육받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 내용의 성평등뿐만 아니라 수업 운영방식을 비롯하여 학급·학교 경영, 물리적인 교육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의 제도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운영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알아봅시다 : 성차별적인 학교 제도 사례 1 - 학생의 출석번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남녀공학 학교들이 출석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남학생을 우선 배치한 후 여학생을 20번 혹은 50번 이후로 일괄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글자모순이나 생년월일순, 키순 등 이미 합의되고 고정된 순서나 원칙이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불변하는 원칙이나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순번을 부여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잠재의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출석번호에 남학생을 우선 배치하는 것에 관한 지적과 개선 권고는 이미 2001년부터 있었다. 당시 여성부 산하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한 중학교 여학생이 낸 시정 요청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라고 권고했다(〈중앙일보〉, 2001.06.21.).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미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나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 시절부터 남학생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차별적 생각을 무의적으로 갖게 하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16) 해당 부분은 최윤정 외(2019a), '학교 양성평등 지표를 활용한 교육환경 진단 연구'의 "제II장. 이론적 배경과 논의" 부분의 일부를 발췌·인용·재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5.10.17.), 해당 학교장에게 출석번호 제도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2018년에도 해당 학교가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학내 여론조사 결과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이 방식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학교 행정에 큰 지장 없다"는 이유로 재차 성차별로 판단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성차별적 출석 관행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부의 권고가 내려진지 13년째 되는 지난 2013년 김명호 경북도의원실이 경북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경북 지역 전체 477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 47%인 200곳의 학교에서 여전히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여학생보다 일괄 우선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겨레〉, 2013.06.27.).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번째 제소 건이 2018년이라는 점, 최근까지 해당 이슈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참조할 때(〈파이낸셜뉴스〉, 2018.03.14.), 성차별적인 출석번호 관행이 학교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순번식 출석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일부 학교들은 이름 가나다순으로 한다거나, 학생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남녀순서를 매년 바꿔서 기존의 남녀순번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가 행정편의적인 방식이 아닌 구성원들의 합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창의적인 방식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바람직할 수 있다.

알아봅시다 : 성차별적인 학교 제도 사례 2 - 교복 디자인과 활용

교복에 나타나는 성별 구분과 성차별 논란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치마 교복은 여학생들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동의 제약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로부터 예쁜 다리 순위 매기기를 당한다거나, 등하굣길에 성희롱을 경험하게 하는 등 성인권 안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우춘아•오경희•김희용, 2011). 이와 같은 행동의 제약은 태도와 인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기 시작하면서 다리를 벌리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숙'과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치마 교복을 입으면 겨울철에도 얇은 타이즈에 보온을 의지해야 하고, 장시간 다리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하는 자세는 허리 긴장으로 인한 통증도 경험하며 불편을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여학생, 학부모, 여성단체에서도 치마 교복의 불편함과 성별 고정관념을 지적했다(교육부, 2000). 이러한 권고의 영향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허용하는 학교 규정이나 교칙은 그동안 상당수 개선되었다. 최윤정 외(2019a:63)가 2019년 전국의 1,161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5.8%

학교들이 여학생에게 바지 교복을 허용하고, 77.8%가 생활복을 허용하며, 60.0%가 여름철 반바지 교복을 허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교의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여학생의 바지 교복 착용이 일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여학생의 바지 선택을 규정상 허용하기는 하나, 치마 교복을 기본으로 의무화하면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바지 교복을 추가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바지 교복 착용을 위해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인천일보〉, 2019.01.24.). 또한 여학생용 바지 교복을 별도로 디자인하지 않고 남학생용 바지 교복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아 외모를 중시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예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보이시(boyish)해 보일까 봐', '남들이 다 입기 때문에', '치마가 적절하다는 학습된 무기력함으로 인해' 바지 교복을 꺼리는 여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한겨레〉, 2014.11.23.; 우춘아·오경희·김희용, 2011). 근본적으로 아이돌 등을 모델로 내세우면서 교복업체나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미의 기준이 획일화되었다는 점이 다양한 교복을 선택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불꽃페미액션과 초등성평등연구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70cm 신장의 학생이 입는 교복이 7~8세 아동복보다 길이가 짧고 통이 좁았으며[17], 〈동아일보〉의 조사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평균 체형에 맞는 교복 사이즈가 초등학교 5학년(11~12세)용 아동복보다 모든 둘레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동아일보〉, 2018.07.04.).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학생 교복' 관련 청원이 289건에 달한다는 점 또한 많은 여학생들이 불편한 교복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18]

최근의 교복 이슈는 남녀학생 모두가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생활하기에 편한 교복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하복의 경우 정장식 교복을 폐지하고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로 대체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복의 경우에도 후드티나 집업 형태로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85.9%가 여학생의 바지 교복, 고무줄 교복, 기모바지 등 실용성과 활동성을 강조한 편한 교복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 또한 이러한 추세를 보여 준다(〈국민일보〉, 2019.04.15.).

해외에서도 젠더리스(genderless) 교복이 확대되는 추세다. 영국 웨일스 교육부는 2019년 9월부터 웨일즈 전역에서 성중립적인 교복 정책을 전면 시행했는데, 이 때문에 여학생용 교복과 남학생용 교복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여학생이 바지교복을 남학생이 치마교복을 입는 것이 가능해졌다(〈문화일보〉, 2019.07.18.). 일본의 한 교복업체에서는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젠더리스 교복을 개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9.01.31.).

17) 불꽃페미액션, [교복입원프로젝트] 6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갇혀 지낸다면? 아동복보다 작은 교복??, https://www.youtube.com/watch?v=QyW0ynOuPsY(2019.9.30.)

18) 2019.10.1. 기준, '여학생 교복'이라고 검색한 결과다. https://www1.president.go.kr/(2019.10.1.)

[표-6] '양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학교 교육목표 사례

교육목표

◇ 더불어 사는 사람: 민주시민 의식과 양성평등으로 소통하고 협동하는 어린이
◇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
◇ 평등·평화·평생교육 구현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다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 함양
◇ 교육과정과 학교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바른 태도 형성
◇ 양성평등한 학교, 밝고 건강한 해피배움터를 위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 성차별 없는 자녀교육
◇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 남녀 차별이 아닌 차이의 인정을 통한 교육 활동
◇ 성차별 없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

자료 출처: 최윤정 외(2019a). p.91

성차별적인 교훈이나 급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사례에 의하면 '도와준다, 희생한다', '착한 딸, 어진 어머니', '슬기롭고 알뜰한 참여성' 등 여성의 미덕과 존재의 목적을 '어머니'로 한정하고, 이 조차도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하여 가족을 건사하는 전통적 모성상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일부 여학교가 있었다. 심지어 어떤 여학교에서는 '겨레의 밭'을 교훈으로 지정해 훌륭한 모성을 갈고 닦는 것, 그리고 여성을 '출산하는 자'로 강조한 사례도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10.31.)[19].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꿈을 키우자, 땀을 흘리자', '하면 된다', '개척', '스스로 배우자' 등 개인의 노력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10.31.). 특히 동일한 재단의 학교일지라도 여학교의 교훈은 '내일을 이끌 숙녀가 된다', '아름다워라!'인 반면, 남학교는 '높고 큰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 '높은 이상을 갖자!'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10.31.)은 '능력 있고, 노력하는 남성'과 '미(美)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는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차별성을 드러낸다.

급훈의 경우 담임교사가 지정하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도 쉽지만, 학교의 교훈, 특히 사립학교의 교훈은 설립자의 이념을 따르거나 설립 당시 세워진 교훈을 전통처럼 여겨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관습적인 이유일 뿐,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학교장의 의지의 문제로 보인다.

19) 해당 학교는 2019년 현재까지도 이 교훈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교육목표는 교훈보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수정이 좀 더 쉽다. 최윤정 외(2019a)가 전국의 2,463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학교에서 양성평등을 학교의 교육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알아봅시다 :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을 위한 제안 - 독일의 사례

양성평등한 관점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앞서 나열한 몇몇의 사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 규정이나 제도에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연수, 개인과 개인·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서 배우는 성평등한 시민성, 시설과 장비 등 보이는 영역에서 드러나는 성인지적인 고려 등 다층적·다면적인 이슈와 그것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성인지적인 학교 운영방안이 잘 담긴 사례로 2016년 독일 연방 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채택·배포한 '성인지적 학교교육을 통한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침(Leitlinien zur Sicherung der Chancengleichheit durch geschlechtersensible schulische Bildung und Erziehung, 이하 성인지적 학교교육 지침)'을 소개한다.

해당 지침(Kultusministerkonferenz, 2016)은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①교수요목, 시험·과제, 교수학습 자료의 성평등 ②교직 훈련과 연수를 통한 성평등 ③학교 구조의 성평등 ④인력개발 분야의 성평등 ⑤교육시설의 성평등 ⑥포괄적 조치로 나타나는 성평등이다. 즉, 학생 대상 교육과 가장 밀접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영역 외에도 이를 가르치고 지도·관리하는 교직원 대상 교육, 교육의 의사결정 과정 영역, 교육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 영역, 직원 채용과 같은 인적자원 관리의 영역 등 교육을 둘러싼 일체의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이 '학생 대상 교육', 다시 말해 교수학습 자료나 내용, 관련 도구와 방법 등에 방점을 두었다면 독일의 지침은 학교 평가나 대내·외적 관리지표에 나타나는 성평등·성인지적 관점의 인력채용과 절차를 보장하고, 단순한 물리적 환경을 넘어 건설과 관련 장비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며, 수업시간표 같은 학교 생활계획의 성평등까지 교육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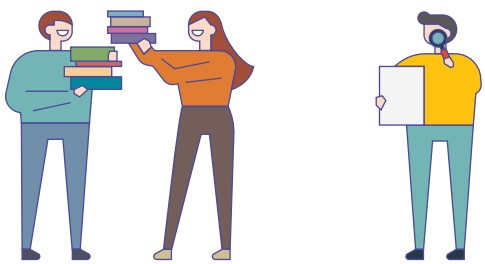

[표-7] 독일, 성인지적 학교교육으로 평등한 기회 보장을 하기 위한 지침

1. 교수요목, 시험·과제, 교수학습 자료

교과서와 기타 교육·학습 자료는 커리큘럼, 교육 계획은 물론 이 지침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성인지적 차원의 교수법과 학문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커리큘럼과 학습 계획은 성별 고정관념 없애기를 목적으로 모든 과목에 젠더 관련 시사점을 구체화한다.
- 교육을 위한 권장 사항·유인물에는 수업시간과 학교생활에 실제 적용되는 성별 측면에 대한 조언(주의점)을 포함한다.
- 지침과 관련해 세워진 학습목표에는 수업과 학교생활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성별 측면에 대한 조언(주의점)을 포함한다.
- 수업·교육 자료와 시험지의 모든 과제에 성별 고정관념을 없앤다.
- 학교가 교과서 공식 승인이나 교과서 조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교과서 내용이 남녀 성역할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현실 세계를 반영하도록 주의한다.

2. 교직 훈련·연수

교직 훈련과 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젠더 관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젠더 관련 능력을 위해 다음의 항목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성평등 차원에서 교과과정의 체계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성평등관점이 반영된 교사 연수 과정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교사 훈련 단계에서 세미나 교육과 실무 지침을 성평등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한다.
- 성인교육에서 성인지적 교수법(수업방법론) 활용을 위한 추가 교육(훈련) 조치를 고려한다.
- 재교육 과정 중 적당한 맥락에서 젠더 관련 쟁점을 다룬다.

3. 구조적 접근

실제 학교교육의 개발과 질에 대한 책임은 학교 관리와 학교 감독관에게 있으며 이들에게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 달성을 위한 젠더 관련 능력이 요구된다. 많은 국가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내부·외부의 평가와 평가를 위한 도구를 도입했다. 이는 적절한 기준과 지표를 통해 성차별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성평등관점에서 학교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조직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성평등한 학교 관련 각종 전문위원회와 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 학교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필이나 학교 프로그램을 성평등 측면에서 고려한다.
- 내부·외부 평가와 감사를 위한 도구와 절차에 성평등 측면을 포함한다.
- 성별 분리된 교육과 관련한 통계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출판한다.

4. 인력개발

책임이 있는 모든 직군(특히 관리직)에 있는 이들은 성평등과 관련해 다양한 성역할 형성 추구를 위한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

- 구인 광고에서 '젠더 관련 능력'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거나 전문가 경력으로 인정한다.
- 의사결정자들의 젠더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한다.
- 인력 선발 절차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진행한다.
- 차별 없는 인력평가를 인력개발 틀 안에서 보장한다.
- 교육, 연수, 멘토링 등 인력개발을 할 때 성별 다름을 고려한다.

5. 교육시설

성별 고정관념은 학교 건물, 학교 운동장·학교 스포츠 시설과 같은 공간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기타 학습 공간은 소년과 소녀의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하는 여러 공간에 대해 소년과 소녀의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 학교 건설·장비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과 의사 결정 관행에서 젠더 관점과 젠더교육 목표를 고려한다.
-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학교 정규 교육 시간 외에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종일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조치는 성인지감수성을 담고 있어야 하며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6. 포괄적 조치

학교교육 영역은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다양성과 평등 인식 아래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남녀 역할 관념에서 벗어나 역할을 확장하는데 적합한 학습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다. 다음의 교육과정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성별 차원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수업과 추가 교과과정에서 구두·서면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언어 관련 교육
-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과정
- 학생을 위한 직업 오리엔테이션, 학생을 위한 생활 계획(수업 시간표 포함) 과정
- 미디어 속 젠더 고정관념이나 역할 모델 등을 다루는 수업 내 미디어 교육
- 학교 내 성차별·성폭력 방지 교육
- 부모와 협력하는 과정(부모가 성평등에 관한 학교 활동에 참여)
- 성별 차이가 반영된 과학·수학 교육과정

출처 : Kultusministerkonferenz(2016) pp.4~8. (최윤정 외, 2019b:29-31 재인용)

적용해 봅시다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실천하기 위한 '양성평등 진단기준' 측정과 활용[20)]

[표-8]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의 영역과 배점 (단위 : 점)

대영역	배점	중영역	배점	세부지표	배점
1. 양성평등한 학교문화와 인프라	40	1.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에 나타난 양성평등	17	1. 성차별적 규정 개선 여부 또는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규정 제정 여부	12
				2. 학생 의견을 청위하여 성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양성평등 규정을 제정한 경우	5
		2.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와 개선 조치	13	3. 학교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 실시 여부	6
				4.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조치 여부	7
		3. 양성평등한 학교시설과 환경 구축	10	5. 양성평등한 화장실 설치 (남녀 화장실 비율 1:1.5)	5
				6. 양성평등한 탈의실 설치 여부	5
2.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 운영	45	4. 학교 교육목표에 반영된 양성평등	16	7. 양성평등한 교육목표 수립 여부	8
				8.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 활동계획 수립 여부	8
		5. 양성평등교육에 투입된 행·재정적 지원	10	9.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인력 배치 여부	5
				10.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과 규모	5
		6. 양성평등교육 실적	14	11. 교과과정의 양성평등교육 실적	7
				12. 비교과과정의 양성평등교육 실적	7
		7. 학생의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5	13. 학생 대상 양성평등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5
3.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15	8. 교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10	14. 교직원의 양성평등교육·연수 참여	10
		9.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5	15.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연수 참여	5

20) 해당 부분은 최윤정 외(2018c),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전단기준 개발 연구'의 일부를 발췌·인용해 재구성했다.

진단기준 구성과 측정 방법

교육부는 양성평등한 학교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 '우리학교 양성평등은 어떠한가요?'라는 제목으로 학교의 양성평등 수준을 자율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처음 개발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후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표가 수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수정된 2018년 양성평등 진단지표를 중심으로 해당 지표를 설명하고 측정 가이드라인과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세부지표별 개념과 측정할 때 주의사항 등 가이드라인은 [표 9]와 같다. **<세부지표1>**은 성차별적 규정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학교 규정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인 내용을 개선한 사례가 있거나, 반대로 양성평등한 규정을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 12점을 부여한다. 이때 성차별적인 표현으로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복장·태도·상벌 규정 등에 성차별이 있거나, 남녀학생의 대우를 달리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성별 비율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양성평등 관련 규정을 제정한 사례로는 성차별적 언행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그 외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비가시적인 개선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지표2>**는 **<세부지표1>**과 방식은 비슷하나 학생회 등의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성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양성평등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로, 있다면 5점을 부과한다.

<세부지표3>은 학교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는지를 묻고 점검한다. 이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지에 관한 지표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운영 현황과 실태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지를 개발하여,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점검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교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차별 사안들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 청취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노력이 시도되었다면 6점을 부과한다. **<세부지표4>**는 양성평등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조치 여부다. 이는 **<세부지표3>**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발굴된 성차별 사안이나 제안된 양성평등 건의안 등을 실제 학교운영에 적용하고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다양한 개선 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건당 배점을 달리하여 1건 5점을 시작으로 건당 1점을 가점하며, 최고점은 7점에 한정한다.

<세부지표5·6>은 학교시설 관련 지표다. **<세부지표5>**는 남녀 비율에 따른 화장실 변기 설치 여부로 여성용 대변기의 수가 남성용 대변기·소변기 수의 1.5배가 되면 5점을 부과한다. **<세부지표6>**은 탈의실 설치 여부로 교직원·학생용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남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별학이라도 반드시 설치되었을 때 5점을 부과한다.

<세부지표7>은 학교 교육목표에 성평등관점을 반영했는지 여부다. 이 때의 반영은 '남녀', '젠더', '성인권', '성인지감수성', '성차별', '성폭력' 등 성평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만 인정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8점을 부과한다. **<세부지표8>**은 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다. 학교 구성원별 연간 교육계획이 모두 수립되었을 때 8점이 부과된다.

<세부지표9·10>은 행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으로 **<세부지표9>**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여부를 의미하며, 이때의 전담인력은 학교 양성평등 관련 기획·집행·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의 직무에 명시되어야 한다.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세부지표10>**은 양성평등교육 관련 예산 사항으로 당해 연도 양성평등 관련 행사나 교육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며, 연수비나 교자재 구입비 등 구체적인 예산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세부지표11·12>는 교육과정의 양성평등교육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다. **<세부지표11>**은 교과교육의 실적을 측정한 것으로 해당교육을 '양성평등교육'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과내용과 관련해 양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점수 부여한다. 하지만 해당 수업의 교육목표나 내용 등 의도된 교육일 경우에만 인정하며 교사가 중간에 잠깐 언급하는 등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측정방법은 다소 복잡한데, 쉽게 말해 교육 시수당 참여 학생 수의 총합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며, 이 값이 10 이상인 경우 7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7점에 비례한 점수를 부여한다. 이 지표에서 10의 의미는 1년간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교과교육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표-10]에 제시되었고, 실제 산출 예시는 [표-11]을 참조한다. **<세부지표12>**는 비교과교육의 양성평등교육 실적이다. 행사나 체험 등 비교과의 양성평등교육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 측정산식은 **<세부지표11>**과 동일하지만 만점 기준이 두 시간이다. 즉, 이 지표에서는 해당 학교 교원들이 성희롱·성폭력교육을 제외하고 1년 동안 받아야 하는 평균 양성평등교육을 두 시간 이상 했을 경우 7점, 그 이하인 경우는 7점에 비례한 점수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산출예시는 [표-10]과 [표-11]을 참조한다. 학교의 노력 여하를 측정하기 위해 **<세부지표11>**과 **<세부지표12>** 모두 법정 폭력예방교육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세부지표13>은 학교에서 실시한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를 추후 교육계획에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다. 차시별, 학기별, 학년별 등 학교 자체주기로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 대상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5점을 부여한다.

<세부지표14>는 교원 대상 양성평등교육·연수 실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연수 외에도 외부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시도 교육연수원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점검한다. 이 지표에서는 성희롱·성폭력교육을 제외하고 해당 학교 교원들이 1년 동안 받은 평균 양성평등교육이 세 시간 이상인 경우 0점을 부여하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10점에 비례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산출식과 구체적인 산출 예시는 [표-10]과 [표-11]을 참고한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15>**는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 의식 제고 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여부다. 상담주간,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원격 연수 활용 가능)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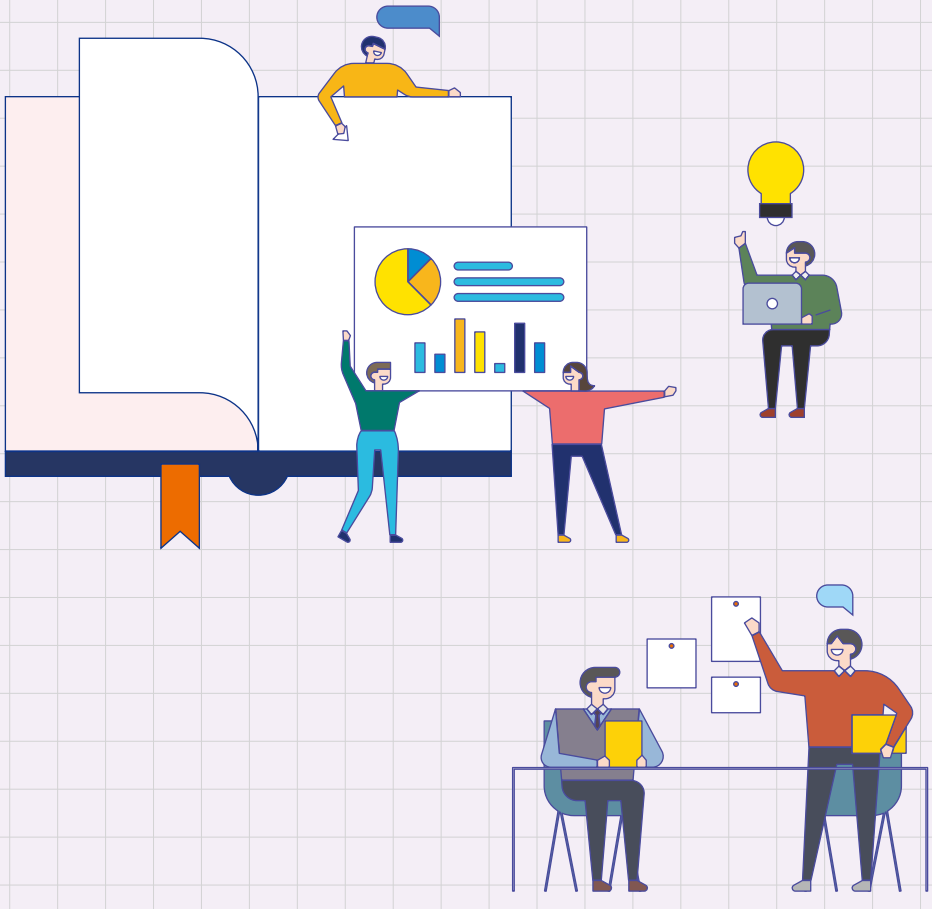

[표-9]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측정 가이드라인

<table>
<tr><th>세부지표</th><th>가이드라인</th></tr>
<tr><td>1.
성차별적 규정
개선 여부 등</td><td>- 지난 1년간 학교 규정에 나타난 성차별적인 내용을 개선한 사례, 또는 양성평등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점검
- 성차별적 규정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규정은 다음의 예시 참고
성차별적 규정의 예시
- 특정한 직책이나 직함, 역할에 있어서 부당한 이유로 남녀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
- 학생의 복장이나 태도, 상벌 규정 등에서 성차별을 하는 것
- 교복을 입는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강요하는 것
- 타당한 사유 없이 학생 자율모임 등에 성별 비율을 제한하는 것
- 출석번호 체계에 관한 개선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규정 예시
- 다양한 학교 활동에서 남녀학생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
- 학내 성별 혐오 표현 제재에 관한 규정
-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성차별적 언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사·학부모 교육 강화에 관한 규정 신설
- 양성평등한 수업환경과 시설 개선에 관한 규정 신설
- 한 건이라도 있는 경우 만점 부여</td></tr>
<tr><td>2.
학교 규칙 개정
과정</td><td>- 양성평등한 학칙(규정)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정과정에 참여하여 추진했는지 점검
- 당해 학년도에 학생 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율) 모임을 통해 학교규칙의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1회 이상 한 경우 만점
※ 양성평등한 학교 규칙으로 개정할 때 학생 의견을 1회 이상 청취한 경우도 만점</td></tr>
<tr><td>3.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td><td>- 학교 운영에 성차별적인 사항은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나 학생들이 경험하거나 느낀 성차별 사례에 관해 별도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 해당 학년도에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조사 1회 이상 실시했을 경우 만점 부여
학교 양성평등 운영 현황 조사 예시
- 학교장 훈화 등의 교육내용이 성차별적인지 여부
- 학생 생활지도가 성차별적인지 여부
- 학교 시설이 성에 따라 이용하기에 편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경험
- 교사들(간)의 언어나 행동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관한 경험
- 학생들 간의 언어나 행동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관한 경험
- 교과서나 교육자료 등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되는지에 관한 경험
- 그 외 학교규정이나 개별교사의 지침 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td></tr>
</table>

세부지표	가이드라인
4. 양성평등 학교를 위한 개선 조치 여부	- 성차별적인 학교 운영 사항 등을 개선하거나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점검 ***이 지표는 세부지표3과 연동하여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와는 별도로 학교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포착되는 문제에 양성평등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 -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조치 건 수에 따라 차등 배점
5. 남녀비율에 따른 화장실 변기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여성 대변기 수의 합이 남성의 소+대변기 수의 합 보다 1.5배 이상이 되게 규정 **남자소변기+대변기 : 여자대변기=1:1.5** - 학생용 화장실 외에 교직원용 화장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화장실이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만점을 부여함(미충족 시 0점) - 단, 화장실 위치, 성별 접근성이 유·불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개선 필요
6. 탈의실 설치 여부	- 체육활동 등을 위해 학생·교직원 대상 남녀 별도의 탈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 별학이라도 별도의 탈의공간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만점 부여 -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남녀 탈의공간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야 만점 부여. 한 성만을 위한 탈의공간이 있다거나 탈의공간을 두 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점수 미부여
7. 양성평등한 교육목표 수립 여부	- 당해 연도 학교 교육계획서에 양성평등교육·문화조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계획의 지향점을 제시했는지 점검 - 교육계획서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 만점 - 교육목표가 양성평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만점 부여. 다음과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야 양성평등 관련 교육목표로 인정 **양성평등, 성평등, 남녀, 젠더, 성인권, 성역할, 성인지감수성, 성교육** - 한편, 다음의 단어를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에도 해당 **성차별, 남녀차별,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 양성평등 교육목표 예시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한다. - 남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다. - 생활 속 남녀 혐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양성평등교육 활동계획 수립 여부	- 양성평등 교육목표(지표7)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양성평등교육 활동 계획을 수립했는지 점검 - 학교 구성원별(교직원·학생·학부모) 계획이 모두 수립되어야 만점 부여 - 교육대상별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활동, 연간 수업(연수), 관련 주간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경우 만점 부여

세부지표	가이드라인
9.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인력 배치 여부	- 양성평등 관련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 - 반드시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만점 부여
10.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과 규모	- 학교 교육 예산 내에 양성평등(성희롱·성폭력예방 포함) 관련 교육이나 행사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 -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예산(행사, 교직원·학부모 연수비, 교자재 구입비 등)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만점
11. 교과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실적	- 교과교육 시간 내 양성평등 관련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는지 점검 - 법정 성희롱·성폭력 교육은 제외 - 안내된 수식으로 결과 값이 10 이상 나온 경우 만점이며, 10 미만이 나온 경우는 7점(배점)에 비례하여 점수 계산(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2. 비교과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실적	- 행사, 체험 등 비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는지 점검 - 법정 성희롱·성폭력 교육은 제외 - 안내된 수식으로 결과 값이 2 이상 나온 경우 만점이며, 2 미만이 나온 경우는 7점(배점)에 비례하여 점수 계산(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3.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교과·비교과과정에서 실시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 학년도 양성평등 교육계획에 반영할 기초자료를 마련했는지 점검 - 학교 자체 주기(수업 차시별, 학기 별, 학년 별 등)로 수업·활동(행사)에 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당해 학년도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만점 **※ 가급적 표본조사가 아닌 전체조사 실시가 원칙**
14. 교직원의 양성평등 교육·연수 참여	- 외부기관(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육청 단위 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직원 대상 교내외 교육과 연수 참여 실적 점검 - 단, 법정교육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은 제외 - 안내된 수식으로 결과 값이 3 이상이 나온 경우 만점이며, 3 미만이 나온 경우는 10점(배점)에 비례하여 점수 계산(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5.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연수 참여	- 학부모 대상 당사자와 자녀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상담주간,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원격 연수 활용 가능)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만점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의 점수 부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측정 내용의 여부에 따라 지표 값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성과 정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지표는 **<세부지표1>, <세부지표2>, <세부지표3>, <세부지표5>, <세부지표6>, <세부지표7>, <세부지표8>, <세부지표9>, <세부지표10>, <세부지표13>, <세부지표15>**이며, 나머지 **<세부지표4>, <세부지표11>, <세부지표12>, <세부지표14>**는 실적이나 성과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 받는데, **<세부지표4>**는 일정 기준에 대한 별도의 점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세부지표11·12·14>**는 만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따라 비례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으로 점수 부과 방식이 상당히 단순한 편이지만 교육의 실적을 측정하는 **<세부지표11·12·14>**의 경우에는 정확한 실적 측정을 위해 참여 학생 수, 건당 교육시수 정보가 필요하다.

[표-10]에 제시한 산출식만으로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표-11]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이들 지표는 교육실적치와 지표 값 산출 과정이 2단계로 진행되어 여부만으로 만점을 부과하는 여타 지표에 비해 산출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산출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배포하는 개발된 엑셀 자료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 해당 자료에는 [표-11]과 같은 표가 내장되어 있어서 관련 정보를 기재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된다. 뿐만 아니라, 전체 지표별 자동 산출이 가능하여 다른 지표들도 가부 또는 실적을 기재하면 해당 지표의 점수뿐만 아니라 중영역, 대영역, 전체 총점까지 자동 산출되며, 매년 학교정보를 누적해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해 시계열 비교 분석 등을 시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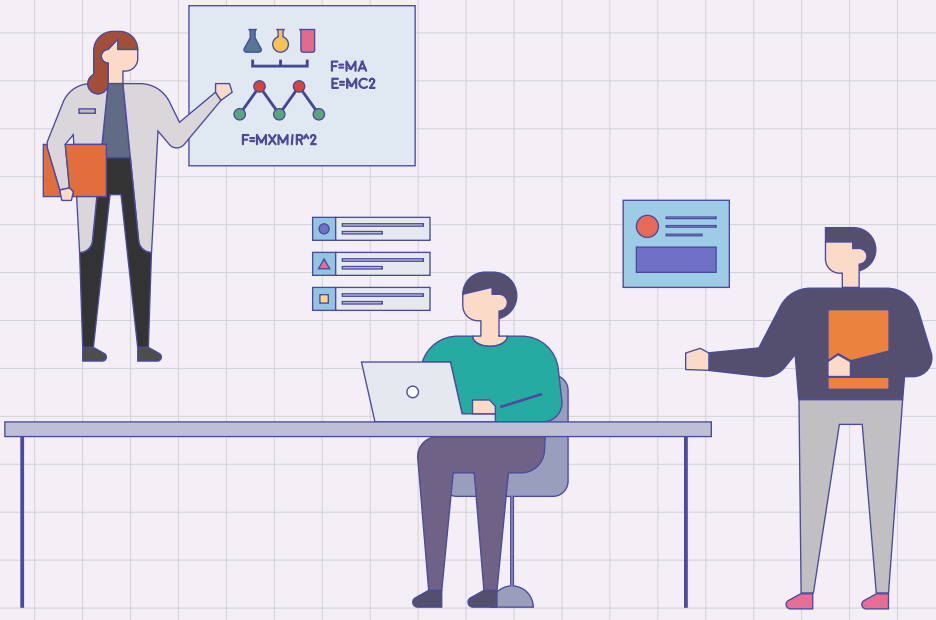

[표-10]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점수 산출방식

중영역	세부지표	산출식
1.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에 나타난 양성평등	1. 성차별적 규정 개선 여부 등	1건 이상 만점
	2. 학교 규칙 개정 과정	1건 이상 만점
2.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와 개선 조치	3.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	실시 시 만점
	4. 양성평등 학교를 위한 개선 조치 여부	건수별로 차등 부여 1건 5점 2건 6점 3건 이상 7점
3. 양성평등한 학교시설과 환경 구축	5. 남녀비율에 따른 화장실 변기 설치	설치 시 만점
	6. 탈의실 설치 여부	설치 시 만점
4. 학교 교육목표에 반영된 양성평등	7. 양성평등한 교육목표 수립 여부	수립 시 만점
	8. 양성평등교육 활동계획 수립 여부	수립 시 만점
5. 양성평등교육에 투입된 행·재정적 지원	9.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인력 배치 여부	전담자가 있는 경우 만점
	10.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과 규모	별도의 예산 수립 시 만점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 포함)
6. 양성평등교육 활동 실적	11. 교과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실적	양성평등 관련 교과교육 10시간 만점(배점 비례) **※ 법정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제외** **1. 교육실적치 산출** 실적치 = $\frac{\sum_{k=1}^{n} t_k a_k}{A}$ (k=교육 횟수, t=교육당 시수, a=교육당 참여 학생수, A=전교 학생수) **2. 지표값 산출** 지표 값 = 실적치/10시간 × 7점

중영역	세부지표	산출식
6. 양성평등교육 활동 실적	12. 비교과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실적	양성평등 관련 비교과교육 두 시간 만점(배점비례) **※ 법정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제외** **1. 교육실적치 산출** $\text{실적치} = \frac{\sum_{k=1}^{n} t_k a_k}{A}$ (k=교육 횟수, t=교육당 시수, a=교육당 참여 학생수, A=전교 학생수) **2. 지표값 산출** 지표 값 = 실적치/2시간 × 7점
7. 학생의 양성평등교육 만족도	13.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실시 시 만점
8. 교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14. 교직원의 양성평등 교육·연수 참여	양성평등 관련 교육 3시간 만점(배점 비례) **※ 법정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제외** **1. 교육실적치 산출** $\text{실적치} = \frac{\sum_{k=1}^{n} t_k a_k}{A}$ (k=교육 횟수, t=교육당 시수, a=교육당 참여 학생수, A=전교 학생수) **2. 지표값 산출** 지표 값 = 실적치/3시간 × 10점
9.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15. 학부모의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연수 참여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만점

[표-11] 교육실적 관련 지표 산출 예시(세부지표11·12·14)

구분	교육 건수	교육명(교과명)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 시수	참여 인원	시수*참여임원 $\sum_{k=1}^{n} t_k a_k$
학생 교과 (세부 지표11)	1	도덕교과 / 인권으로 보는 성평등	4학년 전체	1시수	80명	80
	2	실과시간 / 가족의 다양성 관련 교육	5학년 전체	1시수	90명	90
	3	국어시간 / 양성평등 지문 읽고 토론	3~1반	1시수	25명	25
	4	보건교과 / 평등한 남녀관계와 성	4~6학년	2시수	240명	480
						675
학생 비교과 (세부 지표12)	1	창의적 체험활동 / 양성평등의식 교육	전교생	1시수	450명	450
	2	창의적 체험활동 / 양성평등 Build-Up	4~5반 (담임 재량)	1시수	23명	23
	3	창의적 체험활동 / 양성평등 동아리 교육	동아리 소속 학생	6시수	12명	72
						545
교사 (세부 지표14)	1	학교 자체 양성평등교육 연수	전교직원	1시수	32명	32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사 대상 연수	신청 교직원	8시수	2명	16
	3	연수원 주체 교장·교감 양성평등교육	교장, 교감	1시수	2명	2
						50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측정과 활용은 이렇게!

첫째, 측정-분석·평가-정책 환류의 과정을 단계별로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 지표는 학교별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기 보다, 측정과정을 경험하며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영역별 양성평등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분석·평가'의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그 결과를 다시 다음 해나 이후의 학교 교육계획과 학교 운영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 평가와 환류가 있도록 측정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하여 측정결과와 분석결과를 누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부는 해당 지표를 개발하면서 별도의 엑셀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해당 엑셀 자료는 1차적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지표 내용을 측정하거나 이를 점수로 산출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후의 지표결과와 이를 비교·분석하고 지표별 또는 영역별 학교의 발전 상황과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관리의 목적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측정결과를 매년 공문이나 문서로만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표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꾸준한 축적은 필수 권장 사항이다. 엑셀을 이용한 자료관리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유용하다. 자료를 활용하면 적어도 당해 연도 관할 구역 내 학교들의 양성평등 수준 측정 결과를 한눈에 정리된 자료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학교급별·남녀공학별·지역별 분석 또한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자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측정의 편의성과 자료관리·분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측정 자료는 반드시 엑셀 자료로 보관·축적하고, 보고할 때에도 이를 함께 제출할 것을 권한다.

셋째, 이 지표의 작성자는 학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운영의 상위권자로 설정하면 좋다. 이 지표가 측정하는 범위는 단순히 일부 수업이나 교육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운영과 관련한 거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룬다. 담당자 혼자만으로는 해당 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담당자 혼자 작성하게 되면 타 교사나 직원에게 각 지표의 내용을 일일이 묻고 협조를 구하는 등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 지표의 속성상 명확한 담당자들의 협조와 참여가 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 영역별 담당자들이 지표를 나누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업부과는 양성평등 업무담당자 혼자 할 수 없으므로 그 분업의 책임은 학교장이나 교감이 맡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표 작성과 관련한 실무 작업과 준비 등은 양성평등 업무담당자가 하되, 각 담당자들에게 영역별 작성을 배분하는 역할은 교장이나 교감이 담당하면 좋다. 또한 해당 결과의 작성과 분석과정에 책임자로 관여해 양성평등 담당자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정 관리와 정책 환류 등을 책임지고 함께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 2020.

교육부 보도자료, "여학생 교복의 스커트/바지 선택 착용 권장하기로", 2000.3.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2015a.

교육부,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0〉, 2015b.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c

교육부,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8〉, 2015d.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2015e.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일부개정)〉, 2018.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2019.

교육부 보도자료,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2019.7.16.

교육인적자원부, 〈양성평등 교육 매뉴얼: 우리 학교 양성평등은 어떠한가요?〉,200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2005.10.1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문 진정 0191100 : "출석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성차별". 2018.

〈국민일보〉 기사, "세종지역 학생·학부모·교직원 85% 편한 교복 전환 필요하다", 〈국민일보〉, 2019.4.15.

김애라,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여학생의 규범에 대한 협상과 성적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김은경, "프랑스의 성평등교육: 초·중등 과정", 미발표 원고, 2018.

김자영·이수정·전진현·최윤정, 〈서울시교육청 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교육청, 2020.

〈동아일보〉 기사, "현대판 코르셋 여학생 교복, 아동복과 비교해 보니", 〈동아일보〉, 2018.7.4.

〈문화일보〉 기사, "글로벌 스타일: 여학생에 바지·남학생도 치마… 전 세계 '성중립 교복'확산", 〈문화일보〉, 2019.7.18.

변화순·양애경·이선주·문희영,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 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보도자료, "여·남학생답게~ 그만! 서울시, 학교 내 성차별 언어·행동 바꾸기", 2018.10.31.

심미옥, "장 아동기의 성평등교육"곽삼근 외, 《여성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15.

안상수·김인순·최윤정·김금미·최연혁,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Ⅳ): 초중등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연합뉴스〉 기사, "日 도쿄 지자체 2곳, 여중생에 '젠더리스 바지교복 '허용", 〈연합뉴스〉, 2019.1.31.

오욱환,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2003.

우춘아·오경희·김희용, "젠더 관점에서 본 여학생들의 치마교복: 부산지역 K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3(4)〉, 2011.

〈인천일보〉 기사, "성적순 바꾸고 성차별 없도록… 학생 인권 거침이 없다", 〈인천일보〉, 2019.1.24.

정해숙·유희정·이홍림·이순열, 〈학교 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 의식 고취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8.

〈중앙일보〉 기사, "출석부 여학생 뒷번호는 성차별", 〈중앙일보〉, 2001.6.21.

최윤정·정해숙·장희영·이현주, 〈성평등한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a.

최윤정·문희영·김은경·송현주·채혜원·홍의정, 〈해외 국가의 초중등 성평등교육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b.

최윤정·장윤선·장희영·최윤진,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발 연구〉, 교육부, 2018c.

최윤정·박성정·김효경, 〈학교 양성평등 지표를 활용한 교육환경 진단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a.

최윤정·박성정·장희영·김효경·최윤정, 〈초·중등 성평등교육의 요구현실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b.

〈파이낸셜뉴스〉 기사, "왜 우리 딸아이는 출석번호가 뒷번호인 거죠?", 〈파이낸셜뉴스〉, 2018.3.14.

〈한겨레〉 기사, "성차별적 출석부 바꿔주세요", 〈한겨레〉, 2013.6.27.

〈한겨레〉 기사, "여고생 바지교복이 어때서", 〈한겨레〉, 2014.11.23.

홍후조, "제6장 교육과정". 성태제 외,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4[2007].

Kim, J. H., Cho, W., Moon, M., Park, H., Cho, J., Park, J., Choi, Y., Song, J., 〈EFA National Repor t: Republic of Kor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참고문헌

해외문헌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1991.

Alam, M.-U., Halder, A. K., Luby, S. P., Islam, M. K., Opel, A., Shoab, A. K., Ghosh, P. K., Sarkar, S., Mahon, T. & Unicomb, L.,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knowledge, faciliti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school absence among Bangladeshi adolescent school girls", 〈Paper for Water & Health Conference: Where Science Meets Polic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3-17 October, 2014.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1977.

Chepyator-Thomson, J. R. & Ennis, C. D., "Reproduction and resistance to the culture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in second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cercise and Sport〉, 68(1) 89-99, 1997.

HRW, 《The Education Deficit: Failures to Protect and Fulfill the Right to Education in Global Development Agendas》, New York, Human Rights Watch, 2016.

Kessler, S., Ashenden, D. J., Connell, R. W., & Dowsett, G. W., "Gender relations in secondary schooling", 〈Sociology of Education〉, 58(1), 34-48, 1985.

Kultusministerkonferenz, "Leitlinien zur Sicherung der Chancengleichheit durch geschlechtersensible schulische Bildung und Erziehung", Retrieved from https://www.kmk.org/fileadmin/Dateien/veroeffentlichungen_beschluesse/2016/2016_10_06-Geschlechtersensible-schulische_Bildung.pdf(2019.12.11.), 2016.

Rseau canop. (n.d.). Outils galit filles garons https://www.reseau-canope.fr/outils-egalite-filles-garcons(2020.08.25. 참조)

Skolverket, "Sex Education - Gender equality, sexuality and human relationships in the Swedish Curricula", Retrieved fromHYPERLINK "https//www.skolverket.se/getFile₩?file=3580(2020.5.21"https://www.skolverket.se/getFile?file=3580(2020.5.21.), 2014.

UNESCO,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Retrieved from HYPERLINK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770"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770, 2018a.

UNESCO,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nder Reviews: Meeting our commitments to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UNESCO, 2018b.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 202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202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한국어 번역)
http://www.law.go.kr/trtyMInfoR.do?trtySeq=295&chrClsCd=010202&print=print, 2020.9.18.

불꽃페미액션, [교복입원프로젝트] 6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갇혀 낸다면? 아동복보다 작은 교복??, https://www.youtube.com/watch?v=QyW0ynOuPsY
2019.9.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에서의 차별방지에 관한 협약(한국어번역)
https://unescokor.cafe24.com/assets/data/standard/Wi8plioPm6j0IbwR1bHxj2Zj8qGqRD_1216825200_1.pdf, 2020.9.18.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젠더온
http://genderon.kigepe.or.kr/, 2020.5.18.

Réseau Canopé, OUTILS POUR L'ÉGALITÉ ENTRE LES FILLES ET LES GARÇONS À L'ÉCOLE(남녀학생 간 평등을 위한 실행도구)
https://www.reseau-canope.fr/outils-egalite-filles-garcons.html, 2020.5.21.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방지에 관한 협약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294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2020.9.18.

UN Human Rights,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2020.9.18.

UN Human Rights,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DAW.aspx 2020.9.18.

UN Human Rights, 아동권리협약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2020.9.18.

부록

한발 더 나아가기,
어떤 양성평등교육 정책들이 있나요?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발행일 2020년

발행 17개 시·도교육청

기획·총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필 이정주 (크리에이티브 다양성센터 대표)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 연구위원)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 센터장)
서한솔 (서울상천초등학교 교사)
윤신원 (성남고등학교 교사)
이소현 (안산중앙초등학교 교사)
주윤아 (호평중학교 교사)
한미라 (서울면동초등학교 교장)

감수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김남숙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이해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강사)

제작 (주)디자인위드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강원도교육청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충청북도교육청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